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재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른 인용 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10조의3제2항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안 제3조)

(현행)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없음

(개정)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중 매각 가격의 기준 금액 명시 (안 제4조제①항제2호)

(현행)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인 재산의 매각 가격 사정의 제한이 없음

(개정) 매각가격 사정 기준금액을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다. 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신설(제4조제①항제4호)

(현행)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누락

(신설) 법 개정으로 추가 반영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변경 규정 신설

라. 법령 조문 삭제로 인용규정 변경(안 제4조제①항제3호)

(현행)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득·처분 가격을 시행령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으로 용어 통일(안 제4조제②항제3호)

(현행) 취득·처분 가격: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

(개정) 취득·처분 가격: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바. 법 제92조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대상 및
서식 명시 (안 제6조)

(현행) 영 제52조에 따라 공개하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양식을 규칙으로 정함

(개정) 법 92조 및 영 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고 공개하는 보고서 양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법 조문이동(법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인용내용 변경(안 제11조)

아. 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범위(기준가격, 토지면적)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준 신설 (안 제11조제③항)

(신설) 기준가격 : 취득 - 10억원 / 처분 - 10억원

토지면적 : 취득 - 1천제곱미터 / 처분 - 2천제곱미터

자. 법 제2조 개정('22.4.20.)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
(안 제15조, 안 제18조~안 제22조, 안 제30조)

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⑤항)

(신설) 상위법령(법 제34조 및 영 제13조제③항, 영 제17조제⑥항, 영 제35조)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규정 반영

-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
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감경

카. 영 제32조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3조제②항, ③항)

○ (현행)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회

(개정)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 (현행)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개정)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 (현행)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개정)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 (현행)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개정)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타. 영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6조제⑥항)

○ (신설)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

하. 신탁계약서 양식을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안 제39조제②항)

가.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반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3항(안 제30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

- 법 제34조제2항 → 영 제35조제2항제3호 (안 제30조제4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 → 제13조의3제3항 (안 제36조제4항)

나.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등

- 로써 → 로서 (안 제31조제1항제1호, 안 제31조제1항제2호, 안 제31조제2항)

- 같음 → 대신 (안 제5조, 안 제 20조, 안제34조, 안제72조, 안제80조, 제81조)

- 산출 → 계산 (안 제28조제1항, 안제29조)

- 의하여 → 따라 (안 제36조제3항제2호, 안 제50조, 안 제72조, 안 제73조제5항, 안 제94조)
- 에게 → 에 (안 제36조제3항제4호)
- 에 대하여 → 은(는) (안 제30조제4항, 안 제59조, 안 제84조제3항, 안 제92조제1항제1호)
- 납부 하게 → 납부하게 (안 제3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용보험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7. 28. ~ 8. 17. (20일)
- 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의한 재산이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 및 영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로 한다.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조 전단 중 “같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보고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 허가대상**”으로, “**토지에 대하여서는**”을 “**토지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

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같은”을 “대신”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산출한”을 “계산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대부료 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된”을 “계산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을 “생산·연구시설은 영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복합공공시설물로써”를 “복합공공시설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으로써”를 “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으로써”를 “재산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되는”을 “계산되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회”를 “4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회”를 “6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에게”를 “법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

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납부 하계”를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기간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9조 중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을 “공용임차주택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같음한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같음한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건설자재에 대하여는”을 “건설자재는”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환자에 대하여”를 “반환자에게”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 ⑭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u>의한</u>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p> <p>3. <u>법 제11조 및 영 제8조</u>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p> <p><u><신 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한 차례만 연임</u>----- -----.</p> <p>⑤ ~ ⑭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의한 재산이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상인</u> ---</p> <p>3. <u>법 제11조</u>----- -----</p> <p>4. <u>법 제10조 및 제10조의2</u>에 따라 <u>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u> 또</p>

4.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생략)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4.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대신-----.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무상사용 허가대상 -----
----- 토지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5. 사용허가 -----
--

6. 사용허가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용허가부-----
----- 대신-----.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2(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8조의2(토석채취료 등) ① ---

----- 계산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 계산-----

-----.

② -----

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2. (생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계산된 -----

-----.

1.·2.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사용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생산·연구시설은 영 제35조제2항제3호-----

-----.

1.·2.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신 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 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 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 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

1. -----
----- 복합공공시 설물로서 -----

2. -----

재산에 한한다) 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써 전
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전세금
은 성북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
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
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
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
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초
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
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

----- 으로서 -----

② ----- 재산으로서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계
산되는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
----- 납부기한-----

-----.

② -----

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
납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
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
회 범위에서 분납

④ (생략)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
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

1. -----
----- 4회 -----
--

2. -----
6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4회 -----
--

3. ----- 6
회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대신-----.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생략)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현행과 같음)

4. -----

법인에 -----

5.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39조(신탁의 종류) (생략)

<신설>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납부하게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이내의 기간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신탁의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사용허가) -----
----- 따라 -----

-----.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
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
여야 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
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
는 것으로 이를 같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
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제59조(준용) ----- 공용임차주
택은 -----
-----.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 -----

----- 따라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신-----.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라 -----

결정한다.

⑥ ~ ⑧ (생략)

제8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같음한다.

제81조(장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같음한다.

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② (생략)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한다.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신한다.

제81조(장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
신한다.

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건설자재
는 -----

-----.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7 , 2009. 07. 10, 2011.7.20.)

가.·나.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

1. -----

사람에게-----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반환자에게-----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

----- 따라 -----

-----.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재무과장 강 은 주